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8년 한센인피해자지원 지자체보조사업 2분기 국고보조금 교부

1. 질병정책과-178(2018.1.8.)호 관련입니다.
2. 2018년 한센인피해자지원 지자체보조사업 2분기국고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교부하오니,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은 지자체에서는조속히 해당 시스템(지방재정정보시스템(E-호조시스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으로 신청하시어, 위로지원금 교부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과목 : 091-3500-3539-300-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붙임 1.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2분기) 1부
2. 시도별 교부내역서(2분기)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생활보건과장), 부산광역시(건강증진과장), 대구광역시(보건건강과장), 인천광역시(보건정책과장), 광주광역시(건강정책과장), 대전광역시(보건정책과장), 울산광역시(건강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 경기도지사(보건위생담당관), 강원도지사(보건정책과장), 충청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보건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보건의료과장), 전라남도지사(보건의료과장), 경상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 경상남도지사(보건행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건강위생과장)

주무관 안성웅 보건사무관 박광택 질병정책과장 전결 04/18 김기남

협조자

시행 질병정책과-2800 (2018.04.18.) 접수 생활보건과-9397 (2018.4.18.)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4층 질병정책과 / http://www.mohw.go.kr
전화 044-202-2511 /전송 044-202-3928 / asu9107@korea.kr / 비공개(5)

시·도별 교부 내역서

구 분	지급인원	교부액(천원)
합 계	3,807	2,055,780
서 울	29	15,660
부 산	207	111,780
대 구	39	21,060
인 천	72	38,880
광 주	2	1,080
대 전	30	16,200
울 산	49	26,460
세 종	28	15,120
경 기	265	143,100
강 원	87	46,980
충 북	46	24,840
충 남	56	30,240
전 북	723	390,420
전 남	696	375,840
경 북	730	394,200
경 남	747	403,380
제 주	1	540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명 :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 보조 사업자 : 서울특별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천원)*	지방비	재정용자	수익자부담
합 계		6,940,0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서울)		52,2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부산)		372,6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대구)		70,2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인천)		129,6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광주)		3,6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대전)		54,000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천원)*	지방비	재정용자	수익자부담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울산)		88,2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세종)		50,4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경기)		477,0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강원)		156,6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충북)		82,8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충남)		100,8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전북)		1,301,4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전남)		1,252,8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경북)		1,314,0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경남)		1,344,6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제주)		1,800			
미통지		87,400			

○ 보조비율 : 국고 100%

○ 사업내용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결정한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 지급

교 부 목 적 :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 지급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1	3500	3539	300	330-01
보건	보건의료	암및원폭한센인지원	한센인피해사건진 상조사 및 위로지원	한센인피해사건진 상조사 및 위로지원	지자체 경상부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2/4분기)	교부잔액	비고
합 계	6,940,000	2,741,040	2,055,780	2,055,780	2,055,78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서울)	52,200	20,880	15,660	15,660	15,66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부산)	372,600	149,040	111,780	111,780	111,78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대구)	70,200	28,080	21,060	21,060	21,06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인천)	129,600	51,840	38,880	38,880	38,88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광주)	3,600	1,440	1,080	1,080	1,08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대전)	54,000	21,600	16,200	16,200	16,2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울산)	88,200	35,280	26,460	26,460	26,46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세종)	50,400	20,160	15,120	15,120	15,12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경기)	477,000	190,800	143,100	143,100	143,1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강원)	156,600	62,640	46,980	46,980	46,98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충북)	82,800	33,120	24,840	24,840	24,84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충남)	100,800	40,320	30,240	30,240	30,24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전북)	1,301,400	520,560	390,420	390,420	390,42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전남)	1,252,800	501,120	375,840	375,840	375,84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경북)	1,314,000	525,600	394,200	394,200	394,2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경남)	1,344,600	537,840	403,380	403,380	403,38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제주)	1,800	720	540	540	540	
미통지	87,400				87,40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서울특별시 2018년 4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 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 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 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